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428
----------	-----

발의연월일: 2025년 5월 9일

발의자: 이창열 의원

찬성자: 남진삼, 김광성, 심현정 의원

### 1. 제안이유

상위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문을 변경하고, 평창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 제명변경

- (현행)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개정) 평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서식 정비

-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군수의 책무,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 등 신설(안 제4조~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붙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4. 25. ~ 2025. 5. 7.(13일간), 아래 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세정과)	사유	의회 의견
제6조(구성) 제1호 ----- 위원 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구성) 제1호 -----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 촉직 위원의 경우에 는)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 분이 있어서 전체 의 원의 성별을 10분의 6 으로 조정하기 곤란함 따라서 위촉의원에 한 하여 특정 성별이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정함이 타당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수용]

##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평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평창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군수 표창장 ·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 의결한 사항

제6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군수는 법 제5조”로, “법 시행령(제3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12조”를 “법 시행령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를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로, 같은 서식 중 “결과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결과를 「평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u>평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평창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p>
<u>&lt;신 설&gt;</u>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li> <li>「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li> </ol>

를 말한다.

3. “예우”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신 설>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신 설>

제5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

	<u>향</u>
<u>제2조(구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별시행령(제3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u>	<u>제6조(구성) 군수는 법 제5조-----</u> ----- ----- ----- ----- ----- ----- ----- <u>법</u> <u>시행령 제12조-----</u> ----- -----.
<u>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1. -----</u> ----- ----- <u>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2. (생략)</u>	<u>2. (현행과 같음)</u>
<u>3.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복지업무담당 부서장, 재단법인 <u>평창장학회</u>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	<u>3. -----</u> ----- ----- -- <u>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u> -- ----- ----- ----- -----.
<u>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u>	<u>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u>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4조 ~ 제6조 (생 약)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 ④ (생 약)

제8조 ~ 제13조 (생 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 심의요구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번호	신청인			기탁금액	기탁관서	기 탁 목 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설·과·단·소장 (서명)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 제10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11조(회의) 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7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 심의요구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번호	신청인			기탁금액	기탁관서	기 탁 목 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설·과·단·소장 (서명)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위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위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평창군 기부자 애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 평 창 군 수 귀하

###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표)

[별지 제3호서식] (부표)

[별지 제3호서식]

###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위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평창군 기부자 애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나. 목적 :
    - 다. 기탁금품액 :
    - 라. 기 타 일 :
  - 마. 기탁판서 :
3. 심의결과
  - 가. 원인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 이유 :

### 평 창 군 수 귀하

## [개정안 전문]

### 평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구성)**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복지업무담당 부 서장,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 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 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 ·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 3) 환경보전
    - 4)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
    - 5) 보건·복지 증진
    -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세정과장 정 유 진
연락처	(033) 330 - 2270